



[2012.10.18] [480 , 2012.10.18,]

() 044 - 201 - 6901

1 () 「 」

[2011.2.1]

2 () 「 」 (" ") 2 2 1 .

[2011.2.1]

3 () 2 3 2 .

[2011.2.1]

4 () . . . (50 50) . (" ") 50 (" ") . 4 1 (" ") . < 2012.10.18 >

1 1 ,

1 15

[2011.2.1]

5 () . 4 2 1 1 31 .

[2011.2.1]

5 2() 6 1 2 " "

1. 「 」 6 . 7 . 7 2 8 가 . .

2. 「 」 30 3 가

3. 「 」 30 3 (「

」 4)

[2011.2.1]

6 () . 6 4 (

.)

2 , . . . (50 .) . (" . ") 50 (" ")

, 14 . <

2012.10.18 >

- 1.
- 2.
- 3.
- 4.
- 5.

1 .

2 .

[2011.2.1]

7 <2007.7.4>

8 () 7 1 7 2

3 .

7 3

2 , .

14 .

- 1.
- 2.
- 3.
- 4.

6 2 3

[2011.2.1]

9 (.) 8 1 , 8 5 8 2 2

2 . (

)

(

)

,

(

,

.) . (

.

) . < 2012.10.18 >

- 1.
- 2.
- 3.
- 4.
- 5.

(工程圖)

1

「

」

23

가

44

가

1

가

가

.

1

2

3

. < 2012.10.18 >

[2011.2.1]

10 () 8 1 8 2 2

1. ()

2. , 2 2 가

3.

4.

1 4 ()

· , ·

1 3 .< 2012.10.18>

1.

2. ,

3.

4. ·

· · 2

.< 2012.10.18>

[2011.2.1]

11 () 8 2 · 5 8 2 3

4

8 2 " 가 7

"

1. · ()

2. 가 18

3. 2

[2011.2.1]

11 2(·) 8 3 3 (" "

) · 2 ("

") 가 , · ·

.< 2012.10.18>

1. (2 5 1)

2.

3.

4.

5.

6.

, · ·

< 2012.10.18>

1.

- 2.
- 3.
- 4.
- 5.

「 」 (" ")

)

[[2011.2.1](#)]

12 () 12 1 9 ()
) 1 100 , 5 5

12 1 30 .

[[2011.2.1](#)]

13 <2011.2.1>

13 2() 16 2 1 (" ") . 5

16 2 3

6 .

16 2 3

「

」

[[2011.2.1](#)]

14 (.) 17 1 . ,

1. . 가

2. 4

3. 7

4. 가 가

5.

[[2011.2.1](#)]

15 () 18 1 7

. , 5 (

)

)

(

)

1.

2.

1

「

」

36 1

(

)

1

7

6

[[2011.2.1](#)]

16 () 가 18 3 (

7

)

- 1.
- 2.
- 3.

[[2011.2.1](#)]

17 () 18 5

[[2011.2.1](#)]

18 () 18 5

가 10)

20 (

[[2011.2.1](#)]

19 () 11 · 13 19

[[2011.2.1](#)]

19 2() 8 2 2

")

8

(

("

)

(

)

「

」

(

"

")

- 1.
- 2.
3. 「

」

2

1

(

8

2

1

1

)

8 2 3

21 1

[[2012.10.18](#)]

20 () 23

. < [2012.10.18](#) >

1. 8 1 5

: 1 (

9)

2. 8 2 2

: 1 (

9)

[[2011.2.1](#)]

21 ()

9 1

10

. < [2012.10.18](#) >

9 3

15

. < [2012.10.18](#) >

[2011.2.1]
 [2012.10.18]

21 2()
 31
 [2009.6.30]

3 1

2013 12

< 480 ,2012.10.18 >

[별표 1] <개정 2011.2.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캡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기 관 명

수신자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악취방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악취민원 및 조치 현황

구 분	발생 건수			조치 결과										
	계	악취배출 시설	악취배출 시설 외	기타	계	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조치명령	개선 권고	경고	고발	과태료	기타
악취관리 지역														
악취관리 지역 외의 지역														

주)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의미하고, 악취배출시설 외는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을 의미하며, 기타는 악취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업장 등을 의미함.

주요 조치 결과 내용

일련번호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 내용	조치 결과	비고

주) 고발, 과태료, 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주요 작성대상으로 하고, 비고에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음.

- 붙임: 1. 악취민원 실태분석 결과 및 악취민원 해소 방안
2. 악취관리 우수 사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관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관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저활용종)]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업의 시설
-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 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의 보관시설
-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의 시설
- 사.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 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동차 수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제사(製絲) 및 방적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제조업, 신발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 출판업,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 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포함하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도장(塗裝)시설, 표면처리시설,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을 가진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시설

비고

- 1. 제재 및 목재 가공업의 시설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제재업(20101)은 제외한다.
- 2. 출판업 시설에서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악취배출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		주 생산품명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 공정	원료	규격	수량	악취 유발 물질	악취방지시설 (악취저감방법)	규격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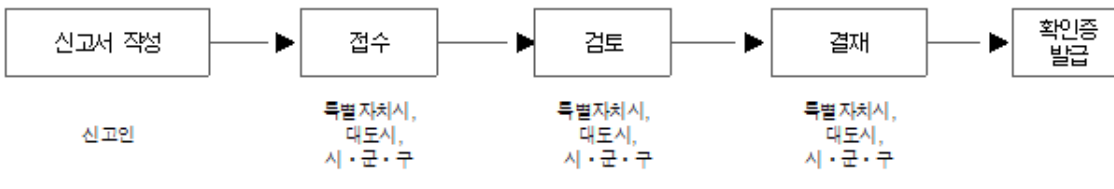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장 배치도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4. 악취 방지계획서 5. 악취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수수료 10,000원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나.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도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라.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마.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바.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사.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아.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자.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차.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카. 맥아 및 맥주 제조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타.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파.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하.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m ³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거. 섬유 염색 및 가공 시설	용적 합계가 5m ³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너.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m ³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더.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m ³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러. 신발 제조시설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제조시설
머.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m ³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m ³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버.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m ³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서.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m ²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처.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커. 무기안료·염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

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터,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 시설 및 생산시설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허,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 시설	1) 용적이 1m ³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m ³ 이상인 증자(혼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고, 의약 제제품 제조 시설	1) 용적이 1m ³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노,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m ³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도,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m ³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로,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	1) 용적이 1m ³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모.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보.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소.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오. 금속의 용융·제련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용적이 5m ³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m ³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초.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토.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포.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 폐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구.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누. 폐기물 보관·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두. 그 밖의 시설	위 가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 터
메틸메르캡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

<변경사항>

날 짜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날 짜	내 용	확 인

<참고사항>

날 짜	내 용	확 인

210mm×297mm[복합용지(1종) 120g/㎡]

- 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 (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 가. 연소에 의한 시설
 - 나.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 바.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명	원료	규격	수량	시설명	원료	규격	수량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제8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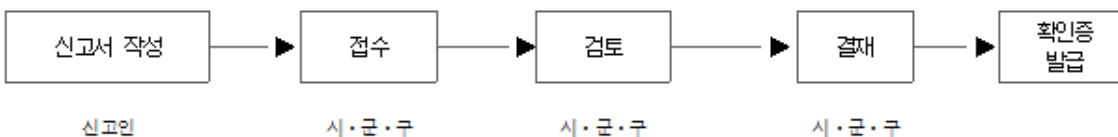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원본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변경신고서의 원료란은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내 용	방 법
현황 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 마.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 바.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정번호 제 호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3. 사업장 소재지: (전화:)

4. 실험실 소재지: (전화:)

5. 검사항목:

6. 지정조건:

「악취방지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브라운지(1종) 120g/㎡]

<변경사항>

날 짜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날 짜	내 용	확 인

210mm×297mm[보존 용지(1종) 120g/㎡]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대기환경기사 1명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악취희석장비 1벌 5. 악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분석장비별) 1벌 6.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비고

1. 대기환경기사는 다음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라.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악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 가. 대기환경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악취판정요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악취판정요원 선정검사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5. 지정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보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악취방지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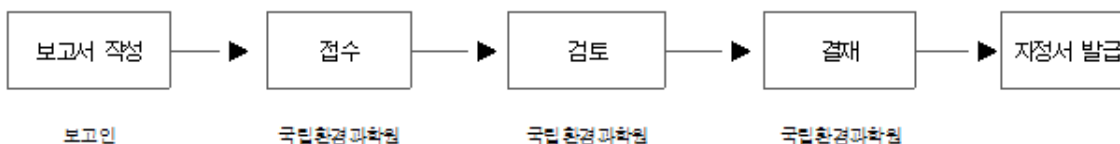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자할용품)]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1. 시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한다.
2. 검사기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을 해야 한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5. 검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가. 실험일지 및 검량선(檢量線) 기록지
 - 나. 검사 결과 발송 대장
 - 다.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술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신청 내용	업 종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주요 생산 공정
	주요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 종류		
	기술지원 희망일자		
	기술지원 요청사항 (악취관련 문제시설 요약 등 가능한 상세히 기술)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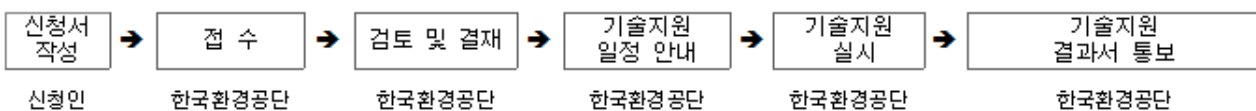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工程圖)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공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의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사용중지 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우 라)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명령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폐쇄명령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중지 명령		

비고

사용중지 기간은 사용중지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3)가) 및 4)의 경우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약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가) 검사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별표 10] <개정 2011.2.1>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

업무 내용	보고 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 보고 접수 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 과학원장
2. 악취검사기관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 분 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